

[사 건 명] 행심 2015-21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처분의 경위

- 가. 청구인은 교내 후배 금품 갈취 및 협박, 폭행 지시 사건으로 2015. 4. 15. 개최된 2015년도 제3회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일의 징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생활지도부 교사가 2015. 4. 28. 13시경 3층 2학년 ■■에서 청구인이 후배인 2학년 청구 외 ●●●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를 훈육하였으며, 다음날 2학년 교무실을 찾아온 ●●● 학생으로부터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 다. 실태조사 결과 2015. 5. 1. 청구인이 청구 외 ●●● 등 11명의 2학년 후배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117 및 학교 전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다.

피해학생	내용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날 때 마다 엉덩이나 어깨를 주먹이나 발로 찰. • 바지를 벗기거나 벗기려고 함. (5회 정도) • 4.23. ■■■에서 체육복 바지를 내리려고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중순부터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벗겨지기도 함. 팬티색깔을 놀림. • 등, 뺨을 때리고 엉덩이, 종아리를 차고 상습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림. • 4.23. ■■■에서 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림. • 3월 첫 번째 동아리시간에 무릎에 강제로 앉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11월부터 싫다고 했는데도 불을 꼬집고 괴롭힘. • 3월 중순 핸드폰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담배꽂초를 밟으라고 함. • 4.23. ■■■에서 바지를 내려 성적 수치심을 느낌. • 사람들 앞에서 외모를 지적하여 창피를 느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에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림. • 4.28. 섹시한데, 얼굴보이면 못생겼다고 하고, 잘 때 섹시하다고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말 박태준을 데리고 와 댄스를 시키고, 싫다고 하자 명치를 때리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림. • 친구인 앞에서 남자친구와 뽀뽀하라고 요구 • 4.28. ■■■에서 어깨에 손을 올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친구인이 뽀뽀하라고 요구함 (이전에도 3~5회 정도 뽀뽀를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친구들이 많은 농구장에서 체육복 바지를 내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농구장에서 갑자기 체육복 바지를 내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여자 친구들 앞에서 가슴이 크다며 만져도 되느냐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슴을 툭툭 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강제로 목찌빠 게임을 하자고 하고 지면 강제로 뺨을 5대 이상 때렸음. • 4.24. 점심시간 강제로 게임을 시키고 고무장갑으로 얼굴을 비벼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강제로 목찌빠 게임을 시켜서 지니까 뺨을 세게 한대 때림. 	

라. 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청구인은 2015. 5. 7.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5. 5. 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전학, 학

부모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통보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5. 5.1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2015. 5.21.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재심 청구에 대하여 2015. 6.11.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2015. 6.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 바. 이에 청구인은 2015. 7.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장 직권으로 2015. 7. 6. 인용 결정을 통보 하였으며, 2015. 7.20. 2015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위원회의 승인으로 추인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바지내리기 등은 평소 청구인이 학생들과 자주 하는 장난이었고, 오히려 한 학생은 먼저 팬티 색깔을 알려 주는 등 장난을 해 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치마를 들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게임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게임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의향이 있는 학생들과 같이 한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지더라도 후배들에게 때리라고 했는데 때리지 않은 것이다.
- 나. 청구인은 학생들이 기분 나쁜 줄 모르고 한 악의 없는 장난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중학교에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 다. 피청구인은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불리 학교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진술한 만날 때마다 엉덩이나 어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린 것은 사실이 아니고, 괴롭힐

생각으로 볼을 꼬집은 것도 아니었으며, 담배꽁초나 담배 갑을 뱉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게임은 옆 여학생들이 부추겨서 한 것이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닌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을 밝혀 억울한 일과 청구인에게 평생 따라다닐 오명이 없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번 건은 지난 4. 15. 청구인의 2학년 학생들에 대한 폭행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처분한 사회봉사가 시행되기도 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청구인의 2학년 ●●● 학생 등 11명에 대하여 한 바지 내리기 등의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하게 된 것이다.
- 나. 바지내리기 사건은 4. 23. 점심시간에 울타리 넘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연습을 하고 있어서 ●●● 등 2학년 학생들이 울타리 펜스에 붙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뒤에서 체육복 바지를 내리고 치마를 들추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바지 내리기는 서로간의 장난이 아니라 사안발생일 외에도 여학생의 바지를 벗겨 팬티색깔을 놀리는 등 성적수치심을 준 명백한 가해행위이고, 피해 학생의 항의에도 개의치 않고 이루어졌으며, 한 학생은 먼저 팬티 색깔을 알려주었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 다. 게임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2명 외에도 평소 농구 하는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도 해서, 친구들과 농구 하고 있으면 청구인이 와서 강제로 게임을 시켰고, 게임을 해서 지면 뺨 때리기로 하고 청구인도 맞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게임에서 졌을 때는 “진짜로 때리려고”라며 실제로 청구인이 맞은 적은 없었다.
- 라. 이 사건은 2학년 후배들에게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청구인은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일부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장난’ 이라고 치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길 원하며 앞으로 열심히 학교생활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학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에 대해 불손하고 무례한 말투와 격한 행동을 하고 있고, 피해학생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전학이 미루어져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학생들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나. 판단

-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해학생	내용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날 때 마다 엉덩이나 어깨를 주먹이나 발로 찎. · 바지를 벗기거나 벗기려고 함. (5회 정도) · 4.23. ■■에서 체육복 바지를 내리려고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중순부터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벗겨지기도 함. 팬티색깔을 놀림. · 등, 뺨을 때리고 엉덩이, 종아리를 차고 상습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림. · 4.23. ■■에서 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림. · 3월 첫 번째 동아리시간에 무릎에 강제로 앉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11월부터 싫다고 했는데도 볼을 꼬집고 괴롭힘. · 3월 중순 핸드폰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담배꽂초를 밟으라고 함. · 4.23. ■■에서 바지를 내려 성적 수치심을 느낌. 	

피해학생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 앞에서 외모를 지적하여 창피를 느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에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림. • 4.28. 섹시한데, 얼굴보이면 못생겼다고 하고, 잘 때 섹시하다고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말 박태준을 데리고 와 댄스를 시키고, 싫다고 하자 명치를 때리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림. • 친구인 앞에서 남자친구와 뽀뽀하라고 요구 • 4.28. ■■에서 어깨에 손을 올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친구인이 뽀뽀하라고 요구함 (이전에도 3~5회 정도 뽀뽀를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친구들이 많은 농구장에서 체육복 바지를 내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농구장에서 갑자기 체육복 바지를 내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여자 친구들 앞에서 가슴이 크다며 만져도 되느냐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슴을 툭툭 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강제로 목찌빠 게임을 하자고 하고 지면 강제로 뺨을 5대 이상 때렸음. • 4.24. 점심시간 강제로 게임을 시키고 고무장갑으로 얼굴을 비벼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 강제로 목찌빠 게임을 시켜서 지니까 뺨을 세게 한대 때림.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평소 바지내리기 등을 장난으로 다른 학생들과 자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이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교내 후배 금품 갈취 및 협박, 폭행 지시 사건으로 2015. 4. 15. 개최된 2015년도 제3회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일의 징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학생들의 자술서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피해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학생이 존재하고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 나아가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향후 선도 가능성도 낮아 보이므로, 청구인은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